

보호받는 영업비밀의 범위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의 중요한 기술이나 영업비밀이 해외 또는 경쟁회사에 유출되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기술과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는 기업의 사활뿐만 아니라 국부의 창출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나 정보가 보호를 받는 것일까?

글_황선익(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영업비밀이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다. 여기서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그리고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고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여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거래처 배포용 등으로 제공되고 그 일부가 이미 웹사이트에 공개된 휴대전화기용 미들웨어의 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공연히 알려져 있는 것 이거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직원들이 취득·사용한 회사의 업무 관련 파일이라 하더라도 보관책임자가 지정되거나 보안장치·보안관리규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중요도에 따른 분류 또는 대외비·기밀자료 등의 표시도 없이 파일서버에 저장되어 회사 내에서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접근·열람·복사할 수 있었다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볼 수 없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A회사를 퇴직한 사람이 재직 중에 알게 된 A회사 물건의 납품가격 및 하청업체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A회사의 거래사인 B회사와 영업을 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사례

그러나 대법원은 조달물자구매계약상 철도청에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기술상 정보인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의 경우 신청에 의한 도면의 출도·열람을 허가하는 철도청 도면관리규정이 존재하고 자료의 일부가 몇 차례 출도·열람되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영업비밀 보유자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린바가 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의 관리자모드를 구성하는 소스파일 역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피해 회

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산화아연 제조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를 퇴사 직후 채용하여 그가 알고 있는 「신형 산화로」에 관한 위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같은 형태의 「신형 산화로」를 축조하게 한 후 산화아연 제품을 생산한 경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종전회사에서 품질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비밀 준수에 관한 서약을 하는 등 종전회사를 퇴사한 후에도 상당기간 「신형 산화로」에 관한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영업비밀 침해 행위의 처벌

다만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잠정적·임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가처분은 그 성질상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피보전권리가 소멸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그 취소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함에 있어 그 금지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도 말했다시피 고도로 산업화된 현대에 있어 신기술은 엄청난 경제적 부를 가져다 줄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산이 된다. 그러다보니 기술개발 못지않게 그 기술을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지정·고시한 산업기술에 대하여 더욱 두터운 보호와 육성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법과 제도만으로는 날로 지능화되는 기술유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기업 스스로가 신기술보호와 인력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